

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70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6월 14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계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성과급을 제외하고, 보수기준의 상한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연봉” 에서 성과급을 제외함(안 제2조제3호).
-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로 하고 후속 규정을 정비함(안 제4조).
- 관보에 고시할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5조)
- 보수기준의 권고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(안 부칙 제2조 신설)

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“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” 을 “기본연봉을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(보수기준의 권고)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.

1.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: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
2.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

안 제5조 중 “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” 를 “이를 관보에 고시하고” 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보수기준의 권고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의 임원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임원”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과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연봉”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, 실적수당,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<u>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.</u></li> </ol> <p>제4조(보수기준의 권고)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: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<u>6배 이내</u></li> <li>2.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</li> </ol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<u>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고시 및 공고) 시장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된 후 1일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임원”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과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연봉”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, 실적수당,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<u>기본연봉을</u> 말한다.</li> </ol> <p>제4조(보수기준의 권고)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: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<u>6배 이내</u></li> <li>2.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5조(고시 및 공고) 시장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된 후 1일 이내에 <u>이를</u> 관보에 고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보수기준의 권고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의 임원부터 적용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고 상한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.
2. “임원”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연봉”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, 실적수당,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수기준의 권고)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.

1.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: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
2.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

제5조(고시 및 공시) 시장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된 후 1일 이내에

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점검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보수기준의 권고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의 임원부터 적용한다.